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02호)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김태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43호)

검 토 보 고

2025.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성 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1. 광규택의원 대표발의	1
2.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1. 광규택의원 대표발의	2
2.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4
III . 총괄 검토	6
1.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6
2. 관계 기관 의견	11
IV . 주요 조문별 검토	12
1. 총칙적 규정(광규택·김태선의원안)	12
2. 이전계획 및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김태선의원안)	21
3. 해양산업 육성 지원(광규택의원안)	26
4.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광규택·김태선의원안)	41
5. 이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지원(광규택·김태선의원안)	48
6. 부칙(광규택·김태선의원안)	54
[참고자료]	55

I . 제안경위

1.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02호)

가. 제안자: 광규택의원 등 17인

나. 제안일: 2025. 7. 16.

다. 회부일: 2025. 8. 29.

2. 김태선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43호)

가. 제안자: 김태선의의원 등 14인

나. 제안일: 2025. 8. 12.

다. 회부일: 2025.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광규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502호)

가.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촉진, 이전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정주여건 개선,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2)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안 제4조)
- 3)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안 제5조)
- 4) 지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 5)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안 제7조)
- 6)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안 제8조)
- 7)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규정
(안 제9조)
- 8) 이전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9) 재정지원 및 특례(안 제11조)

2.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143호)

가. 제안이유

부산광역시는 북극항로의 관문이자 유라시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복합물류 거점으로서,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잠재력을 지닌 도시입니다.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첨단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 산업과의 연계 등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산에 해양 관련 기관이 집적되면 기관 간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를 세계적인 해운·항만산업, 조선·자동차·석유화학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시킬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전문인력이 집중되고, 업무연속성이 중요한 특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주거·교육·문화 등 실질적인 생활 여건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특별법은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폭넓게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이 조기에 안정화되고, 최대한 신속하게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전의 안정성과 실효

성을 높이고, 그 성과가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로 확산되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나. 주요내용

- 1)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2)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과 이전기업의 이전의 기본이념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3) 중앙행정기관 등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이전 규모 및 범위,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이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전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4) 이전기관 등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을 지원하고,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지급, 전세자금 융자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Ⅲ. 총괄 검토

1. 제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가. 제정안의 필요성

- 두 건의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은 이에 더해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기능 고도화를 위해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함.

- 정부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수도권 집중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구상을 발표하고, “균형발전 3대 특별법”을 제정하였음.¹⁾ 2007년에는 「혁신도시법」 제정을 통해 비수도권 10개 지역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여 공공기관 이전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²⁾ 이후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하였음(제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제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오히려 확대되었고, 2019년에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 인구를 초과하였으며,³⁾ 혁신도시의 인구와 고용이 증가하는 단기적 효과는

1) 「지방분권특별법(법률 제7060호, 2004.1.16.제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법률 제7061호, 2004.1.16.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7062호, 2004.1.16.제정)」

2) 10개 혁신도시는 부산, 광주·전남, 울산, 대구·경북, 경남(진주),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전북(전주·완주), 경북(김천), 제주임.

보였으나 장기적 지속성을 담보할 지식기반산업의 고용은 확대되지 않는 등의 한계점이 지적됨.⁴⁾

2020년 이후에도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약에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여 부산을 해양강국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부산은 해양산업과 항만의 중심지로서,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은 조선·해운·항만·물류 등 인프라 집적을 기반으로 한 해양 거점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해양정책의 현장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정부는 2025년 연내에 해양수산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할 계획임.

중앙부처 이전은 단순 사무공간 이동이 아닌 인력 재배치·정주 여건·교육·주거 문제 등 복합적 과제를 수반하며,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조기 정착을 위한 생활여건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이 요구됨.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이 실제 해양 거점 육성을 통한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필수적임.

이에 제정안들은 이전 과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관운영의 조기 안정화 및 해양수도 육성이라는 지방이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됨.

3) 조규민·손동욱, 「공공기관의 지방 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 활성화 효과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제107권, 2020.12.

4) 문윤상,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효과 및 정책방향」, 『KDI정책포럼』 제283호, 2021.10.21.

나. 제정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 내용

- 두 건의 제정안 제명은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의원안)’과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의원안)’임.

곽규택의원안은 11개 조문의 본칙과 2개 조문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김태선의원안은 12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본칙과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정안의 구성체계 비교]

곽규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의 조성)	
제5조(해양산업 집적 촉진 및 지정)	
제6조(지산학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제7조(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확대)	
제8조(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제9조(민간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제10조(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전·입학 편의 제공)
제11조(재정지원 및 특례)	제7조(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8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12조(예산지원 등)
부 칙	부 칙

□ 두 제정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나, 광규택의원안은 부산을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김태선의원안은 이전기관 등에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그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각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정안의 주요내용]

구 분	광규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목적	·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의 안정적 추진 · 해양산업 관련 기관·단체 집적 촉진 → 국가균형발전 및 해양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공공기관 등의 부산이전에 따른 지원 사항 규정 →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정의	· 이전대상기관 · 해양산업 집적지	· 공공기관 · 이전기관 · 해양수산기업 · 이전기업
기본이념과 책무	-	국가·지자체의 정주여건 개선 지원 및 필요한 예산 확보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	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단, 완화된 규정은 그 법률 적용
이전계획 ·이전지원 계획 수립	-	·(이전계획) 이전기관의 장이 이전규모, 시기, 비용조달 방안 등을 포함하여 수립 ·(이전지원계획) 부산시장이 이전기관등과 소속기관에 대한 지원내용을 반영하여 수립
해양산업 지원	·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 지산학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 외국인 투자 유치	-

구 분	곽규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 민간투자 유치	
이전(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 주거지원(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 자녀 교육기관 연계 및 우선 배정 협조 · 체재비, 이사비 및 교통비 실비 지원 · 학교설립 등, 교육재정, 전·입학편의 등 교육 관련 지원	· 이사비용 실비 지급 · 이주지원비 지급 · 자녀 학업·양육 지원 ·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등록세 환급 · 교통·복지·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 이주직원에 대한 주택 우선공급 · 주택대출 관련 규제 완화 · 전·입학 편의 제공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 국가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 지자체 및 이전대상기관에 재정적 지원 가능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우선 고려	· 이전비용의 지원·융자 가능 ·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건설 시 공공택지 우선 공급 · 이주직원 기숙사 건설 시 주택 도시기금에서 건설비용 융자 · 국가 등이 건축한 건축물 이전 기관등에 분양 또는 임대 · 이전기업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이전과 관련한 인허가승인 등 필요한 행정지원 · 국가는 이전기관등 또는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 지원 가능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 지원 가능 · 이전기관등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이전기관등이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 · 조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감면

2. 관계 기관 의견

- 해양수산부는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해양수산기업의 이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이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산업 전반에 걸쳐 국가 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마련을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은 제정안의 취지 및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정안들이 정하고 있는 특례 및 지원책 중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 조세감면, 부담금 감면, 국가 전략기술 또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대해 현행 제도와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수정 의견을 제시함.
- 인천광역시는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 논의는 전국적 사안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부산 중심 보다는 권역별로 해양산업 기능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재이전은 행정비효율을 초래하고, 해양수산부 이전 특별법이 선례가 되어 타부처 이전이 계속 추진될 경우 「행복도시법」의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를 제기함.
- 부산광역시는 부산시로의 이전기관 및 그 직원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의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하에서는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조문별로 검토함.

IV. 주요 조문별 검토

1. 총칙적 규정(곽규택·김태선의원안)

- 제정안의 총칙적 내용은 목적·정의·기본이념과 책무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법률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곽규택의원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김태선의원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가. 목적(곽규택·김태선의원안)

- 제정안들은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조).

【 제정안 조문 비교 】

곽규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이 법은 <u>부산 해양수도 조성</u> 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 및 해양수산기업의 <u>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u> 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목적 규정은 해당 법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요약한 조문으로,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개별 조항을 해석하거나 집행할 때 그 해석의 기준이 됨.

□ 두 제정안은 모두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해양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곽규택의원안은 해양산업의 기능 고도화를 제정안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반면, 김태선의원안은 부산시 이전에 따른 이전기관등과 그 소속직원 등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제정안의 입법 목적에 해양산업 육성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할지 여부는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보임.

□ 목적 규정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해양수산부(곽규택의원안)’ 또는 ‘중앙행정기관(김태선의원안)’의 이전에 관한 부분을,⁵⁾ 인천광역시에서는 ‘부산’으로의 이전을 명시한 부분을 각각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⁶⁾

5) 세종에 위치한 중앙행정기관의 재이전은 행정비효율을 초래하고, 해양수산부 이전 관련 특별법이 선례가 되어 타부처 이전이 계속 추진될 경우 행복도시법 실효성 약화 우려 등 제기

6) 해양수산부 등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과 전국적 사안인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가 같이 논의되는 것은 부적절하며, 부산은 타 시·도에 비해 해양산업 경쟁력이 현저히 우수한 상태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 해양산업 기능 고도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다른 규정들에서도 부산을 명시한 부분에 대해 삭제 의견 제시

나. 정의(곽규택·김태선의원안)

□ 제정안들은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려는 것임(안 제2조).

【 제정안 조문 비교 】

곽규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 대상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해양산업 집적지”란 해양수산부 및 관련 산업·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이 밀집하여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이전기관”이란 제1호의 공공기관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해양수산업”이란 「해양수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이전기업”이란 제3호의 해양수산업 중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지역에 소재한 기업은 제외한다.

□ 정의 규정은 제정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정하여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곽규택의원안은 “이전 대상기관(해양수산부, 그 소속기관, 산하기관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해양산업 집적지(해양수산부 및 관련 산학연 밀집 지역)”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김태선의원안은 “공공기관⁷⁾(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⁸⁾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기관(공공기관 중 부산 이전기관)”, “해양수산기업⁹⁾”과 “이전기업(해양수산기업 중 부산 이전기업)”에 대해 정의하고 있음.

현재 68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¹⁰⁾ 중 부산 이전이 논의되고 있는 기관은 없으며, 산하 공공기관 17개¹¹⁾ 중 본사 또는 주된 사무소가 서울 또는 세종에 위치하고 있는 6개 기관¹²⁾이 잠재적인 이전대상기관이 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전이 확정된 기관은 없음.

□ 김태선의원안은 해양수산기업 중 부산시로 이전하는 기업까지 지원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반면,

곽규택의원안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산하기관만을 이전대상기관으

7) 공공기관은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하나,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관로지원법」 등에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함.

8)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부·처·청을 말하며, 국가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기관을 말함. 소속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부속기관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중 지역적 업무를 당해 관할 구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 설치한 행정기관이고, 부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시험연구·교육훈련/문화/의료/제조/자문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임. 행정안전부 정부조직관리정부시스템 https://www.org.go.kr/intcrn/orgnzt/viewSystem.do?utm_source=chatgpt.com 참조

9)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해양수산업”이란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관련된 다음 산업을 의미(§3-3.)

- 수산자원의 채취·포획·양식·가공·유통과 관련된 산업
- 해운업, 항만건설·운영업 등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
- 해저 또는 해수(해양심층수를 포함)로부터 해양광물(해저광물은 제외)을 탐사·채집·추출·제련(製鍊)·생산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산업
- 해양에너지의 개발·이용과 관련된 산업
- 해양시설물 및 해양공간을 건설·설치·조성하거나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개발·운영과 관련된 산업
- 해양환경 및 해양생태계의 보전·복원과 관련된 산업
- 어촌·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등 해양관광·레저와 관련된 산업
- 해수를 직접 또는 정제·가공하여 이용하거나 소금을 제조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 등

10)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현황은 [참고 1] 참조

11)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현황은 [참고 2] 참조

12) 서울 소재 한국해양환경공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조사협회,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세종에 위치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항로표지기술원임.

로 하여 지원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며, 해양산업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산업 집적지에 대해서도 별도의 정의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제정안의 지원 대상에 기업을 포함시킬 것인지와 제정안의 규율 내용에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를 함께 규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기대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임.

이에 따라 제정안 입법 시 필요한 용어 정의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 정의(김태선의원안)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혁신도시법」의 입법례를 따라 이전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¹³⁾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수정하여 제정안보다 폭넓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세종특별자치시는 “이전 대상기관” 정의 규정(곽규택의원안)에 대해 해양수산부를 제외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기관만을 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¹⁴⁾

부산광역시에서는 “주택특별공급” 및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시함.

1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약칭: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다.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4) 세종특별자치시는 정의 규정외에도 해양수산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관련한 규정들에 대해 삭제 의견을 제시

다. 기본이념과 책무(김태선의원안)

- 김태선의원안은 제정안의 기본이념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

【 제정안 조문 】

김태선의원안
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해양수도 조성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u>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하 “이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이전기관등의 이전 지원에 <u>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u> 하여야 한다.

- 김태선의원안은 부산 해양수도 조성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고(안 제1항 전단, 기본이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전기관등(이전기관과 이전기업)에 대한 수준 높은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1항 후단 및 제2항).
- 기본이념규정은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법률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국가 등이 수행하여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하여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

한 것임.¹⁵⁾

- 법제기술상으로는 기본이념 규정과 국가 등의 책무 규정은 구별되는 두 개의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하나의 조문에 담는 경우라도 기본이념에 해당하는 안 제1항 전단 부분과 국가 등의 책무에 해당하는 안 제1항 후단 및 제2항의 규정을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수정의견(예시) 】

김태선의원안	수정의견(예시)
<u>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산 해양수도 조성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하 “이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이전기관등의 이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u>제3조(기본이념과 책무) ① 이 법은 부산 해양수도 조성의 성과가 주변 도시에 확산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u>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 및 이전기업(이하 “이전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수준 높은 행정·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 환경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③ (안 제2항과 같음)

15)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5.

라. 다른 법률과의 관계(곽규택·김태선의원안)

- 제정안들은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안 제3조, 김태선의원안 제4조).

【 제정안 조문 비교 】

곽규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준용하되, 그 적용이 이 법의 목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규제 특례는 <u>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u>.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u>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u>.

-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은 관련 개별 법률 간 해석·집행 과정에서의 모순이나 저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적용의 우선순위를 정한 것임.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경우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특별법적 성격을 가진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함.

- 제정안들은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완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이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하여 특별법적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되, 곽규택의원안의 경우 동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준용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두고(안 제3조제2항),
김태선의원안의 경우 이 법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4조 단서 규정).

- 광규택의원안 제3조제2항에서 ‘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을 준용하되, 그 적용이 이 법의 목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 법률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타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는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 법에 없는 내용을 우선 적용할 수
없어 실제로는 법집행이 어려우므로, 그 문언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 김태선의원안의 경우 이전기관등에 대한 ① 지원과 ② 규제완화와
관련하여서는 이 법률을 우선 적용하되, 단서에서 ② 규제완화와 관련
하여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¹⁶⁾

- 산업통상자원부는 광규택의원안이 우선 적용되는 관련 법률로 예
시한 법률 중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삭제를,¹⁷⁾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
법」의 삭제를 각각 의견으로 제시함.¹⁸⁾

16) 이전기관등에 대해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입법례]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전략산업등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②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7)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하나 중앙행정기관과 수도권을 관할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있어 제정안과 지원대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는 것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취지 및 지원 원칙과 상충된다는 의견

18)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사항은 「혁신도시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2. 이전계획 및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김태선의원안)

가. 제정안의 요지

- 김태선의원안은 이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시기 및 비용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며,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조).

【 제정안 조문 】

김태선의원안
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전에 필요한 사항 ② 이전기업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전계획은 이전기관등의 본부(본사) 또는 주 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부산광역시장은 이전기관등이 이전하는 지역의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기관등의 의견 및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전기관등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여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전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검토의견

- 김태선의원안 제5조는 이전기관등이 이전규모·범위, 이전시기 및 이전비용 조달방안 등 이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이전계획을 수립하되,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전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전계획은 본부·본사·주사무소 이전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은 이미 대통령 공약 및 업무지시를 통해 정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나, 이전계획 수립을 법률에 명시할 경우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법률에 근거한 절차 진행을 통해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민간기업의 이전을 촉진·지원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혁신도시법」의 입법례와 비교해 보면,¹⁹⁾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이전 규모·범위,

19) 「혁신도시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하 생략)

제43조(중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중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중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중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이하 생략)

시기, 비용조달방안 등을 포함한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점은 제정안과 동일하나 일부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도 있는데,

먼저 「혁신도시법」은 지방이전계획에 포함할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여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감소 최소화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²⁰⁾ 종전부동산에 대한 처리계획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²¹⁾ 제정안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고,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수립한 지방이전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이를 검토·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에서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을 뿐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 아직까지 해양수산부 외에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나, 제정안이 공공기관 및 해양산업 기업까지 부산으로의 이전을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혁신도시 사례와 같이 수입감소 최소화 대책 등 현행법과 유사하게 반영·보완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20)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신축비·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이하 생략)

21) 「혁신도시법」 제43조(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이전비용의 조달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 및 방법
2. 종전부동산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매각하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활용방안 (이하 생략)

□ 김태선의원안 제6조는 부산광역시장²²⁾이 이전기관등의 의견을 들어 이전기관등과 소속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은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전기관등이 정착하게 되는 지역의 생활여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어 주거·교육·교통 등 현장 맞춤형 지원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전기관등의 안정적 정착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혁신도시법」 사례를 보면,²²⁾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이전지원계획의 기준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그 수립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의 특별법적 성격을 감안할 때, 혁신도시 사례와 비교하여 지원 내용이나 범위가 부족하지 않도록, 법문에 이를 직접 반영하거나, 시행령에서 추가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2) 「혁신도시법」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혁신도시법 시행규칙」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의료·문화·체육·공원·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 국토교통부는 김태선의원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이전기관을 「혁신도시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하여 이전계획 및 이전지원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는 「혁신도시법」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삭제하는 의견을 제시함.²³⁾

【 수정의견(국토부) 】

김태선의원안	수정의견(국토부)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규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u><신 설></u>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규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u>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기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이전공공기관으로 간주되며, 혁신도시, 이전계획 수립, 이전지원계획 수립 등 기관 이전에 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u>
<u>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생략)</u>	<u><삭 제></u>
<u>제6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 (생략)</u>	<u><삭 제></u>

23) 「혁신도시법」에 이미 관련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라 이전계획 수립 및 심의, 이전지원계획 수립 및 통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람직하다는 입장

3. 해양산업 육성 지원(광규택의원안)

- 광규택의원안은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²⁴⁾ 기능의 고도화가 가능하도록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지산학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민간투자 유치 등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의 조성(광규택의원안)

- 광규택의원안은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 제정안 조문 】

광규택의원안
제4조(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의 조성) ①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 및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전 대상기관 및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공간 2. 이전 직원 및 가족을 위한 주택단지 및 공동주거시설 3. 유치원·초중등학교·국제학교 등 교육시설 4. 문화·체육·의료·상업 등 복합 편의시설 5.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시설(스타트업 허브, R&D센터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로 지정하거나, 별도로 해양산업에 특화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의 적용을 준용할 수 있다. ④ 혁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해양수산업 분류체계는 [참고 3] 참조

- 광규택의원안은 이전 대상기관 등의 입주 공간, 직원 등을 위한 주거 시설, 교육·문화·체육·의료·상업·연구개발 시설 등을 포함한 혁신지구 구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 기업·연구소·대학·공공기관이 한 공간에 모여 협업과 혁신을 촉진하고, 주거·교육·문화를 포함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인재 유치 및 인력유출 방지하며, 기존 혁신도시 외에 혁신지구를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전기관등의 안정적 정착과 해양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부산은 현재 「혁신도시법」에 따른 혁신도시로서,²⁵⁾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정주여건 및 교육 특례 등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며,²⁶⁾

25)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제1단계 공공기관 이전 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물과학원 일부 등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하였음. 참고로 10개 혁신도시는 부산, 광주·전남, 울산, 대구·경북, 경남(진주),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 전북(전주·완주), 경북(김천), 제주임.

26) 「혁신도시법」 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2. 혁신도시의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혁신도시 내의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혁신도시의 스마트도시 구축에 관한 사항
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7.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8.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제5조의3(입주승인) ①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입주목적의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시·도지사의 입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부산항 일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법」에 따라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운영 중으로, 핵심산업 집적 및 융복합 촉진을 위한 지원과 세제 등 다양한 특례를 적용받고 있으므로,²⁷⁾

광규택의원안에 따른 혁신지구와 현행 법률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해양산업클러스터와의 관계에 있어 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광규택의원안 제4조제2항제3호의 교육시설 중 “국제학교”에 대해 그 기능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립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국토교통부는 안 제4조제1항에서 혁신도시 또는 혁신지구 조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4조제3항의 지정 관련 별도 절차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7) 「해양산업클러스터법」 제16조(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세제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국유·공유 재산의 사용 등의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핵심산업관련기업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21조(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나. 해양산업 집적 촉진 및 지정(광규택의원안)

- 광규택의원안은 해양산업 집적 가능 지역을 해양산업 집적지로 지정하여 해양기술연구기관, 관련 기업 및 교육기관 등이 우선 유치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 제정안 조문 】

광규택의원안
제5조(해양산업 집적 촉진 및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산업 집적 가능 지역을 해양산업 집적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산업 집적지에는 해양기술연구기관, 해양플랜트·해운 등 관련 기업, 해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한다.

- 광규택의원안은 해양산업 집적 가능 지역을 집적지로 지정하여 해양 관련 연구·교육 기관 및 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관련 협업 및 혁신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안 제4조의 혁신지구 및 이미 운영 중인 해양산업클러스터 등 제도와 중복 또는 구분이 불명확하며, 지정권자 역시 산업집적 활성화 취지와 부처간 권한 등을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²⁸⁾

28) 「산업집적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집적이란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동 법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22)와 산학융합지구(§22의4)는 시·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고, 첨단투자지구(§22의6)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 지산학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곽규택의원안)

- 곽규택의원안은 국가가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양플랜트·조선·수산업·해양환경 등 분야별 특화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 제정안 조문 】

곽규택의원안
제6조(지산학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는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해양환경 등 분야별 특화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조선·해운·수산업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해양플랜트·에너지·바이오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해양환경 보전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도모하여 장기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성장동력 확보와 탄소중립·녹색성장,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곽규택의원안은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인 교육·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이해됨.

□ 산학연 협력 촉진과 관련하여 현행 유사 제도와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이며,²⁹⁾ 교육·인재양성 지원에 있어서는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산업계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 안 제6조의 조제목 중 “지산학 연계”라는 표현은 지방의 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협력 체계를 줄인 말로 이해되나, 법제기술상 법률의 조제목에는 줄임말이나 약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으므로 제정안 입법 시 이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29) 「산학협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산학연협력”이란 산업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및 산업체등이 상호 협력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나.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화

다. 산업체등으로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라. 인력, 시설·장비, 연구개발정보 등 유형·무형의 보유자원 공동 활용 등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과 관련된 계획·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제14조에 따른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 8. (생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라.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확대(곽규택의원안)

- 곽규택의원안은 혁신지구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이 진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7조).

【 제정안 조문 】

곽규택의원안
제7조(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 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또는 특례 적용 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취득세 등 조세 감면 및 행정절차 간소화 3. 해외 해양산업 선도기관·대학·연구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영어 등 외국어 기반 행정·교육·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5. 국제 해양박람회, 글로벌 기술포럼,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운영 ② 국가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기관 간 해양글로벌 투자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곽규택의원안은 외국 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의 적극적 유치를 위해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투자지역 지정, 세제 감면, 행정간소화 등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산업은 해운·항만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립업,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등 국제공급망과 긴밀히 연계된 분야로서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음.

제정안은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 외국인 투자와 글로벌 협력을 집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도모하려는 긍정적인 입법 취지로 평가됨.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조세감면 등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므로,³⁰⁾ 동 제정안의 규정만으로는 실제 특례 적용이나 투자 유인 효과를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음.

제정안 입법 시 이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기획재정부는 2018년 폐지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재도입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에 대해 삭제 의견을,³¹⁾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항이라는 등의 이유로 취득세 감면에 대해 삭제 의견을 제시함.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후단 생략)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생략)

31) 과거 우리나라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시행하였으나, EU가 우리나라를 조세 비협조국으로 지정(17.12.)함에 따라 2018년 세법 개정으로 이를 전면 폐지

□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에
 는 동의하나, 외국인 투자 유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총괄하여 일관성 있게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는 입장이며,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제시함.

【 수정의견(산업부) 】

과규택의원안	수정의견(산업)
제7조(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또는 특례 적용 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취득세 등 조세 감면 및 행정절차 간소화 3. 해외 해양산업 선도기관·대학·연구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영어 등 외국어 기반 행정·교육·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5. 국제 해양박람회, 글로벌 기술포럼,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운영 ② 국가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기관 간 해양글로벌 투자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글로벌 협력 확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 국내기업과의 차별 문제 유발 등 1. (제정안 제3호와 같음) 2. (제정안 제4호와 같음) 3. (제정안 제5호와 같음) <삭 제> *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정책 등 주요 사항은 산업부장관이 위원장, 해수부 포함 15개 중앙 부처의 차관 및 시·도지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중으로 별도의 협력체계 구성·운영 불필요

마.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곽규택의원안)

- 곽규택의원안은 디지털 해양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 구축 및 특례 적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 제정안 조문 】

곽규택의원안
제8조(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① 국가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u>디지털 해양산업의 테스트베드 및 실증 거점</u>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 빅데이터 센터, 스마트항만 플랫폼, 디지털 수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2. 자율운항선박, 해양로봇, 해양드론 등 지능형 장비 개발 및 실증사업 지원 3. AI 기반 해양예측·수산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4. 디지털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대학원·훈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산업융합 촉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② 국가는 <u>디지털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u>하여, 예산·세제·R&D 지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 곽규택의원안은 혁신지구를 디지털 해양산업의 테스트베드·실증거점으로 육성하고, 디지털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예산·세제·R&D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부 역시 해운·항만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족 자원 감소, 수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2030 해양한국 비전」의 주요 추진전략 중 하나로 해양수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제시한 바 있으며,³²⁾

향후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와 질적 도약은 해양산업 고도화와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제정안은 이러한 정책 추세와 부합하는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평가됨.

□ 다만, 제정안은 “디지털 해양산업”이나 그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법문의 표현만으로는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며, 「자율운항선박법」,³²⁾ 「스마트도시법」,³⁴⁾ 「국가첨단전략산업법」³⁵⁾ 등 기존 법률과의 체계적 정합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그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두는 경우에는 디지털 해양산업이나 그 핵심 기술의 범위와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32) 이에 따르면, 주요 정책 과제로 ① 해운·항만산업의 스마트화를 위한 차세대 해운·항만시스템 구축, ② 수산업의 미래산업화를 위한 수산업 전주기 디지털화 및 비대면·온라인 등 수산업 유통망 고도화, ③ 해양수산업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수산 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을 제시하였음. 대한민국정부, 『제3차 해양수산발전 기본계획(2021-2030)』, 2021.1.

33)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자율운항선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율운항선박의 기술 및 핵심기자재 개발을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해상물류체계 구축을 통한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도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관리·운영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건설·정보통신기술 등을 융·복합하여 건설된 도시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양한 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말한다.

3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및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등이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략산업등의 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상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일부 법률을 통해서만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기적 평가를 거쳐 비과세·감면을 정비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안 제8조제2항의 지원사항 중 ‘세제’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전략기술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되는 것으로, 개별 법령에서 지정 여부를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제8조제2항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부분에서 ‘국가전략기술’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핵심 기술에 대해’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중소벤처기업부는 안 제8조제1항제5호의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특례’가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8개의 ‘규제 특례 관계법률’³⁶⁾을 의미하는지 여타 법률도 포함하는지 법률 명확성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36)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의3(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규제의 정비 및 특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를 정비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가 정비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서비스·제품과 관련된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관계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규제 특례 관계법률) 법 제19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이하 “규제 특례 관계법률”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4. 「산업융합 촉진법」
5.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6.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7.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8.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바. 민간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곽규택의원안)

- 곽규택의원안은 혁신지구 내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 제정안 조문 】

곽규택의원안
제9조(민간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에 민간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입주하거나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u>조세 감면</u>: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또는 유예 2. <u>입지 지원</u>: 국공유지 무상 또는 저가 임대, 장기 임대부지 공급, 입지 선정 시 우선권 부여 3. <u>자금 지원</u>: 정책자금, 신용보증, 기술보증, 창업투자 등의 금융지원 4. <u>규제특례</u>: 규제자유특구 지정 또는 「산업융합 촉진법」상 실증특례 적용 5. <u>인력지원</u>: 인력 채용 시 인건비 보조, 교육·연수 프로그램 연계 ② 국가는 제1항의 유인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곽규택의원안은 혁신지구 내에 민간기업·연구기관·스타트업 등의 입주·설립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조세감면, 입지지원, 자금지원, 규제특례 적용, 인력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의 적극적 유치를 통해 민간 투자와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혁신지구를 해양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역할을 병행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산업 혁신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통해 투자 환경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획재정부는 개별법상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안 제9조제1항제1호의 국세 감면 내용과 안 제9조제2항의 「조세특례제한법」 부분을 삭제하고,³⁷⁾

「국유재산법」상 영리법인에 대한 사용료·대부료는 유상 사용이 원칙임을 고려하여 안 제9조제1항제2호의 ‘국공유지 무상 또는 저가 임대’ 부분을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으로 수정하며,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뿐만 아니라 특례의 적용 대상 및 적용 요건 등도 대통령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제3항의 위임 규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행정안전부는 개별법상 지방세 감면 규정을 두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지방세 특례 제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세 특례 운영에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안 제9조제1항제1호

37) 세제 운영은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형평 및 재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특정 지역에 대한 조세 특례 적용의 검토를 강행규정으로 개별법에 두는 것은 부적절하며, 경제 여건 및 재정 상황에 맞는 세제지원 방식을 제약할 수 있어 불합리하다는 의견

중 ‘취득세, 재산세’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안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대해 현행 「지역특구법」상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을 둘 실익이 없으며, 규제특례를 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수정의견(기재부·행안부·중기부) 】

확규택의원안	수정의견
제9조(민간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제9조(민간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① (생략)	① (제정안과 같음)
1. 조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또는 유예	<삭 제>
2. 입지 지원: 국공유지 무상 또는 저가 임대, 장기 임대부지 공급, 입지 선정 시 우선권 부여	1.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
3. (생략)	3. (제정안과 같음)
4.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지정 또는 「산업융합 촉진법」상 실증특례 적용	4.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
5. (생략)	5. (제정안과 같음)
② 국가는 제1항의 유인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②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
③ 제1항의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절차 등은 -----

4.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곽규택·김태선의원안)

가.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들은 이전기관 등에 대해 예산·재정상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곽규택의원안 제11조, 김태선의원안 제7조, 제8조, 제11조 및 제12조).

【 제정안 조문 비교 】

곽규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제11조(재정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u>필요한 예산을 확보</u>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 대상기관에 <u>재정적 지원</u>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u>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u>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우선 고려할 수 있다.	제7조(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이전기관등의 <u>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u>하거나 <u>융자</u>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 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전기관등이 <u>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u>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u>기숙사를 건설</u>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u>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u>하여 줄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등이 사용할 <u>건축물을 건축</u>하여 <u>분양 또는 임대</u>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

곽규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이전과 관련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양수도 조성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이전기관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의 이전과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의 이전과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곽규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생태계보전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지원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u>필요한 예산을 지원</u>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이전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u>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u>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들은 이전기관 등에 대한 예산·재정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곽규택의원안은 이전 대상기관(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시행령으로 정하는 산하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에서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근거만을 두고 있는 반면, 김태선의원안은 이전기관등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기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전비용 및 직원기숙사 건설비용 지원, 사무소 건축물의 분양·임대, 행정·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조세·부담금 감면, 이전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필요한 예산 지원 등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이전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규정은 그 필요성과 실효성을 고려할 때 지원 범위와 내용을 구체화하여 입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김태선의원안과 같이 관련 지원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제정안들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짐.

□ 제1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례를 보면, 「혁신도시법」에도 김태선의원안과 유사하게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일정 기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³⁸⁾ 김태선의원안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으며, 대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이전기관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문(안 제12조)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³⁹⁾

□ 또한 「혁신도시법」은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김태선의원안은 이를 “이전공공기관등”으로 포괄함에 따라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범위가 「혁신도시법」과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⁴⁰⁾ 선행 이전기관과의 형평성, 제도

38) 「혁신도시법」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

39) 현행 「혁신도시법」과 김태선의원안의 이전기관등 지원 관련 규정 조문 비교는 [참고 4] 참조

40) 예를 들어, 직원숙소용 주택 공급과 관련한 공공택지 우선공급 등 지원규정은 현행 「혁신도시법」의 경우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제정안에서는 이전기업도 지원대상이 됨.

운영의 일관성·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지원대상 및 범위 등은 현행법 규정과 유사하게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보임.

【 현행 「혁신도시법」과 김태선의원안 비교 】

구 분	현행 혁신도시법(제45조 등)	김태선의원안(제7조)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	비용 일부 지원 또는 용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용자
직원숙소 주택공급 지원	공공택지 우선공급, 주택도시기금에서 건설비용 일부 용자	좌 동
건축물 분양·임대	국가·지자체 등이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가능	좌 동
이전공공기관 수입 지원	현저한 수입 감소 시 일정기간 지원 가능	-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비용 지원 (§34②-11.)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능
	고용보조금 지급(§45의4)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이전공공기관과 혁신도시 내 입주기업·대학·연구소 대상	이전기관등 대상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 지원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등의 이전과 부산 해양수도 조성 지원에 필요한 경우
예산지원 등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출 (§34②, 이전비용, 혁신도시건설비용, 연구기관 등 건축비, 정주환경 개선비용, 기업 등 유치비용 등)	국가가 이전기관등 또는 지자체에 필요한 예산 지원

주: 김태선의원안은 이전기업에 대해서도 이전비용, 직원숙소, 건축물 분양·임대 등 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내용(음영 부분)이 모두 적용

□ 기획재정부는 김태선의원안 제11조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개별법상 조세감면을 규정하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부담금 부과 요건등은 개별 부담금의 근거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⁴¹⁾ 안 제11조에 대해 삭제 의견을 제시함.

행정안전부는 현행 「공유재산법령」상 임대료 감면 등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므로,⁴²⁾ 김태선의원안 제8조의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의 규정 중 공유재산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제정안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입법적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김태선의원안 제7조제4항의 동 법률 인용 부분을 삭제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광규택의원안 제11조제2항 및 김태선의원안 제12조제2항)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임.

국토교통부는 형평성 논란 등이 우려되므로 김태선의원안 제7조제2

4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42) 상시 종업원 수가 10인 이상인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이전기업 등은 현행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 감면, 장기 임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별법에서 사용료 등 감면을 허용할 경우 다른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기관·주민·소상공인 등과 형평성 문제 가능

항 후단의 이주직원 기술사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삭제하고,⁴³⁾ 김태선의원안 제11조의 개발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내용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⁴⁴⁾

산림청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등에 따른 대체 산림의 조성을 위해 원인자에게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감면 여부는 소관 법률인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김태선의원안 제11조 중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입장임.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시에서 이주직원의 주거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 등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련 업무를 부산도시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43)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되어 임대주택 건설, 주택구입·전세자금 융자 등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운용 중으로, 제정안 규정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우려

44) 개발부담금 감면은 적정한 개발이익의 환수 및 배분이라는 제도의 정책 목적과 준조세적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최소한으로 감면대상을 한정하고 형평성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소관 법령인 「개발이익환수법령」에서 감면 여부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의 경우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시 현재도 경감이 가능하므로, 특정 시설에 대한 특혜성 감면은 성실히 감축활동에 참여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야기

5. 이전기관 등의 직원에 대한 지원(곽규택·김태선의원안)

가. 제정안의 요지

□ 제정안들은 이전기관 등 소속 직원의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임(곽규택의원안 제10조, 김태선의원안 제9조 및 제10조).

【 제정안 조문 비교 】

곽규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제10조(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 국가는 해양수산부 및 이전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2. 자녀 교육기관 연계 및 우선 배정 협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체재비, 이사비 및 교통비 등 실비 지원 4. 학교의 설립·이전·운영, 교육재정지원, 전·입학 편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지원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의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u>이사비용</u>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u>이주지원비</u> 등 지급에 관한 사항 3. 이주직원에 대한 <u>자녀 학업 및 양육 지원</u>에 관한 사항 4. 이주직원에 대한 <u>주택구입자금</u> 또는 <u>전세자금 융자</u>에 관한 사항 5. 이주직원에 대한 <u>주택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환급</u>에 관한 사항 6. 이전기관의 이전에 따른 <u>교통·복지·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u>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전기관등의 이주직원에게 <u>주택을 공급</u>

곽규택의원안	김태선의의원안
	<u>하는</u>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우선 공급을 받지 못하는 이주직원에 대해서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장은 「은행법」 등 관계 법률에도 불구하고,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로 이전하는 이전기관등의 소속직원에 대한 <u>주택관련 대출 등의 규제</u>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기관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직원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 제정안들은 이전기관 등 소속 직원의 이주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사비·이주지원비, 주거·(자녀)교육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곽규택의원안은 국가가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공급, 전

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자녀 교육기관 연계 및 우선 배정 협조, 체재비·이사비·교통비 등 한시적 실비 지원, 학교설립 등 교육 지원 등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김태선의원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자녀학업·양육지원,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융자, 주택구입에 따른 취·등록세 환급, 교통·복지·문화·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 대출 규제에 대해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주하는 직원의 자녀가 해당 지역 내 전·입학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혁신도시법」 입법례를 살펴보면, 전·입학 편의 제공(§28) 및 이사비용·이주수당지급·주택공급·주택자금 융자(§47) 등 제정안들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⁴⁵⁾

다만, 현행법상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주체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으

45) 「혁신도시법」 제28조(전·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의 자녀들이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7조(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이주직원에 대하여 이사비용 및 이주수당의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법」 제54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에게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44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로, 국가(곽규택의원안)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김태선의원안)를 지원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들과 차이가 있으며,

김태선의원안 제9조제1항제5호의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등록세 환급에 관한 사항은 혁신도시의 경우 해당 특례가 「혁신도시법」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⁴⁶⁾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현행법과 제정안들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내용 비교 】

구 분	현행법	곽규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지원주체	이전공공기관의 장	국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대상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이전 대상기관 소속 직원	이전기관등 소속직원 (기업 포함)
지원내용	전·입학 편의제공	O	O
	이사비용·이주수당	O	O
	주택공급	O	O
	주택자금 융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O
	자녀학자금	-	-
	지방세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	주택구입에 따른 취득·등록세 환급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1조(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받아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이전공공기관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③ 제1호 각 목의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중앙행정기관 등의 지방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하려는 제정안의 입법 취지와 현행 혁신도시 사례, 제도운영의 예측가능성 확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책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제정안은 필요한 입법으로 판단됨.

□ 다만, 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그 지원 주체를 이전기관으로 할 것인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 할 것인지 여부와 이전기업의 소속직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지방세 특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 등 세법 체계 내에서만 정할 수 있으므로,⁴⁷⁾ 혁신도시 사례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김태선의원안은 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안 제7조·제8조·제11조·제12조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은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 규정들을 모아 우선 규정하고, 이후에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조문 체계로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육부**는 광규택의원안 제10조의 주어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지방세 특례를 받고 있는 법인 등에 대한 특례 범위를 변경하려고 법률을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장으로 수정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며, 안 제2호(자녀 교육기관 연계 및 우선 배정 협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⁴⁸⁾

국토교통부는 광규택의원안 제10조제1호의 주거지원 중 주택 특별공급 및 임대주택 공급 부분을 삭제하고,⁴⁹⁾ 김태선의원안 제9조제2항의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관련 우선 공급 부분을 삭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⁵⁰⁾

부산광역시는 김태선의원안 제9조제3호에 자녀 ‘출산’과 관련한 지원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안 제5호의 취·등록세 환급은 ‘취득세’로 수정이 필요하며, 광규택의원안 제10조제2호에서 교육기관 외에 ‘어린이집’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부산시교육청은 광규택의원안 제10조제2호의 ‘우선 배정 협조’를 ‘전·입학 편의 제공’으로 수정하고, 김태선의원안 제10조(전·입학 편의 제공)에서 초·중등 학교 외에 “유치원 전입”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8) 지원 주체와 내용 등을 「혁신도시법」과 동일·유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주하여 온 지역에 있는 초·중등학교에 전·입학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종전 「혁신도시법」상 지원을 넘어 초·중등학교 우선 배정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

49)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한정된 재원과 물량으로 소득·자산이 낮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제정안과 같이 운영 시 주거취약계층의 입주기회를 축소시킬 우려

50) 현재 부산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공급기준 마련을 검토중으로, 동 제도를 활용하여 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

6. 부칙(곽규택·김태선의원안)

- 제정안들은 부칙에서 시행일 등을 정하고 있는데, 두 법률안 모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태선의원안은 시행령 위임사항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 시행령 제정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 곽규택의원안은 본칙에서 이전계획수립과 관련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법 시행 전 수립된 이전계획의 조정 가능성에 관한 경과조치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 조문 비교 】

곽규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이전 관련 계획은 이 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안 부칙의 규정들은 본칙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제정법률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시행일·경과조치 등의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422

참고 1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현황(68개)

1차 소속기관 (22개)	2차 소속기관 (41개)	3차 소속기관 (5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업감시센터	해양수산물출장소(4개) 사천, 삼척, 당진, 보령
국립해양조사원	지원(14개) 서울, 인천, 평택, 장항, 여수, 목포, 완도, 제주, 부산, 통영, 포항, 강릉, 인천공항, 전주	독도수산 연구센터
동해 어업관리단	해양조사사무소(3개) 남해, 동해, 서해	
서해 어업관리단	부산항 건설사무소	
남해 어업관리단	해양수산사무소(9개) 경인, 여천, 광양, 통영, 속초, 목호, 장항, 완도, 포항신항	
부산해사고등학교	진도항행정보시설사무소	
인천해사고등학교	수산연구소(8개) 동해, 서해, 남해, 중앙내수면, 남동해, 아열대, 해조류, 고래	
지방해양수산청 (11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울산, 동해, 군산, 목포, 포항, 평택, 대산	지방해양안전심판원(4개) 부산, 인천, 동해, 목포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 2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현황(17개)

- ◆ 총 17개 공공기관 - 준시장형 공기업 1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개,
기타 공공기관 15개

기관 구분	기능 및 역할
■ 준시장형 공기업(1개)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 개선사업 및 해양오염 방제활동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교통사고 예방, 해양교통안전체계 운영·관리 지원
■ 기타 공공기관(15개)	
국립해양박물관	·해양문화·산업유산 발굴·보존·연구·전시
국립울진해양과학관	·해양과학에 관한 자료의 수집·전시 및 교육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과학기술정책 지원 및 R&D 기획·관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극지 연구 및 해양과학기술·자원 연구·개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생물자원의 수집·보존·연구·교육
한국해양조사협회	·해저 지형·수로 조사 및 해양관측시설 관리
한국수산자원공단	·수산자원 인프라(바다숲, 바다목장 등) 조성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어항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조사·연구
한국해양진흥공사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선박, 항만 등) 투자 지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업인력 교육·훈련 및 해기사 시험관리
부산항만공사	·부산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인천항만공사	·인천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광양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울산항만공사	·울산항의 개발과 관리·운영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항로표지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 관리

자료: 해양수산부

참고 3

해양수산업 분류체계

연 번	대분류	중분류
1	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업	해양자원 생산, 공급 및 개발업
		해양바이오제품 제조업
		항만 및 해상교량 건설업
		해양수산물플랜트 및 구조물 공사업
2	해운항만업	해운업
		항만업
3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선박 건조 및 수리업
		해양플랜트 구조물 건조 및 수리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부분품 제조업
4	수산물 생산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어업 관련 서비스업
		소금채취업
5	수산물 가공업	수산물 가공업
6	수산물 유통업	수산물 중개 및 도소매업
		수산물 운송 및 보관업
7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양레저관광업
		수산레저관광업
8	해양수산 기자재 제조업	해양 기자재 제조업
		수산 기자재 제조업
9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해양폐기물 처리 및 정화복원업
		해양수산 기자재 도소매업
		해양수산 기자재 수리업
		해양수산인력 고용 알선 및 공급업
		해양수산교육 서비스업
		해양수산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해양수산 금융 및 보험업
		해양수산 협회 및 단체
		수산물 요리 전문점

자료: 해양수산부, 『2024 해양수산 통계연보』, 2024.12., 12쪽

참고 4

현행 「혁신도시법」과 김태선의원안의 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 규정 비교

현행 「혁신도시법」	김태선의원안
제4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u>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시행자”라 한다)</u>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에서 융자할 수 있다.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시행자는 이전공공기관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u>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지원할 수 있다.</u>	제7조(이전기관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이전기관등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u>사업시행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u>는 이전기관등이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직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건설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는 이전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현행 「혁신도시법」	김태선의원안
제46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혁신도시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이전공공기관, 제47조의3에 따른 발전지원센터, 그 밖에 혁신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대하여</u>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u>사업시행자 및 이전공공기관</u>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의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u>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에 관련 법률에 따라 이전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u> ⑤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전기관등에 대하여 이전과 관련한 각종 인가·허가·승인 등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다.</u> 제8조(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u>부산 해양수도 조성에 필요한 경우 이전기관등에 대하여</u>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② <u>이전기관등</u>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지에 대한 사용허가나 공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국·공유지를 매입 또는 원상회복하거나 축조한 시설물을 기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공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현행 「혁신도시법」	김태선의원안
제48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공공기관의 지방이전</u>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공공기관의 지방이전</u>과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u>생태계보전협력금</u>·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u>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u>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이전기관등의 이전</u>과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이전기관등의 이전</u>과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농지법」·「초지법」·「산지관리법」·「자연환경보전법」·「도시교통정비 촉진법」·「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대체초지조성비·대체산림자원조성비·<u>생태계보전부담금</u>·교통유발부담금·광역교통시설 부담금·<u>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u> 및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제33조(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운영)	제12조(예산 지원 등)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전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신축비 등 이전비용에 대한 지원 2.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② 국가는 부산 해양수도 조성을 위해 이전기관등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현행 「혁신도시법」	김태선의원안
비용에 대한 지원 등 혁신도시건설 비용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5.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손실금의 보전 6. 혁신도시의 건설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7. 이전공공기관의 이전비용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제45조의2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 9. 제45조의3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및 자금지원에 필요한 비용 10.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비용에 대한 지원 11.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비용에 대한 지원 12. 그 밖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의 조성 및 발전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에의 지출	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